

수원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가단5468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윤덕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하은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주은희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9. 12.

주 문

1. 경기 화성시 C 임야 12065㎡의 2/2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21. 1.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1. 20. 접수 제144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① 원고는 D에 대하여 2012. 6. 24.자 차용증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7328 대여금 사건의 2013. 10. 28.자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 ② D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분에 관하여 2021. 1. 19.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 20.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선산으로서 종종이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종으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서 D 명의의 지분이 D의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용희